

## 생활쓰레기 배출방법

주인이 손쉽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금일저녁 20:00 - 아침 06:00 까지 내놓아야 합니다.
  - 수거 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.
  - 수거시간이 지난 후에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 집니다.
  -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, 전신주 밑,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.
  -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집 앞,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니다.
- 눈,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 놓읍시다.
-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.
-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 또는 일반봉투에 넣어 내 놓읍시다.
-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요령에 의하여 정해진 날과 장소에 내 놓읍시다.

## 대형폐기물 배출방법

### 대상

냉장고, T V, 가스레인지, 탈수기, 공기청정기, 장롱, 서랍장, 신발장, 문갑, 화장대, 장식장, 침대, 책상 등 대형폐기물

### 배출방법

- 스티커 구입 후 배출일자 및 배출자를 기록하여 배출합니다.
- 스티커 판매처 : 종량제봉투 판매소
- 읍·면 사전신고사항 : 배출시간·장소·품목을 알리면 조속한 수거가 가능 합니다.

## 건설폐기물 배출방법

### 건설폐기물

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콘크리트, 페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럭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성유, 폐벽지, 건설오니, 폐금속류, 폐유리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말합니다.

## 배출자 신고

- 신고의무자
  - 배출자(발주자) 또는 최초 공사 전부를 도급받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단양군청 환경위생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
  -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
  - 배출되는 시·군·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·군·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 km를 초과하여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

미신고대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5톤 미만의 건설폐자재류 또한 매립자에 단순매립하기 보다는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배출토록 협조 바랍니다.

##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

- 이물질은 철저히 제거합니다.
  - 비닐, 이쑤시개, 금속류 등
  - 갈비뼈, 조개류, 옥수수대, 폐식용류, 독극성물질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.
- 물기를 충분히 뺍니다.
  - 채, 망사, 배출용기를 이용합니다.
-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합니다.
- 음식물중간수집용기가 비치된곳(단양읍, 매포읍)에서는 위와같이 배출하면 됩니다.
  -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운행 일정
  - 단양읍 : 월, 수, 금요일만 운행
  - 매포읍 : 화, 목요일만 운행

##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실천방법

- 각 가정에서는 식단을 계획한 후 적당한 양의 알뜰 상차림을 생활화 하고, 남은 음식은 물기,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합니다.
- 일반음식점에서는 좋은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, 권장 반찬수, 양준수, 소형, 복합찬기사용 남은 음식 물 전문처리업체, 농축산가등에 위탁 처리합니다.
- 집단급식소에서는 자율배식, 먹을만큼 덜어가는 습관생활화 하고, 잔반통 없는날을 운영하여 음식물을 줄입니다.

##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

가정,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반드시 일정한 양이 모아지면 투명한 봉투 및 일반봉투에 지정한 일시 및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.

**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배출 하여야만 합니다.**

- **배출시간대**  
지정한요일 금일저녁 20:00 ~ 아침 06:00  
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 배출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.
- **배출방법**  
재활용품만 아래배출요령에 의거 투명봉투, 마대(일정량이상)등에 담아 문앞 또는 지정된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.

**재활용이 안되는 품목과 혼합배출시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**

### 재활용품의 배출요령

종류별	재활용품분리 배출요령
종이류	신문지, 책, 종이컵, 종이상자 등은 이물질 깨끗이 제거 후 묶어서 배출 ※종이팩은 별도로 분리배출(일반폐지와 혼합배출 금지)
캔류	철캔, 알루미늄캔, 부탄가스 등 이물질제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
병류	병마개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
고철류	이물질 제거 후 배출
플라스틱류	마개를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
스티로폼류	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일, 생선상자는 깨끗이 헹구어 배출
농촌폐비닐	흙 등 이물질 등을 제거 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배출
필름류	라면, 과자봉지(은박지, 랩 등)은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
기타류	위의 품목에 속하지 않은 기타 류는 종류별로 일정량이상을 모아 배출

###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

비닐코팅된종이, 페인트통,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, 화장품용기, 거울, 사기그릇, 비디오테이프, 장난감, 운동화, 구두, 우산, 문구 류, 자동차부품 등